

모범절차규칙

적용

1. 이 모범절차규칙(이하 "모범 규칙"이라 한다)은 그 부록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 협정의 제22.10조(절차 규칙)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22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이 규칙에서,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한다.

"보조인"이라 함은 패널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그 구성원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승인된 인"이라 함은 다음의 인을 말한다.

가. 부록1에 따라 지정된 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자,

나. 부록1에 따라 지정된 책임 사무소의 권한있는 피고용인,

다. 패널 구성원, 또는

라. 부록1에 따라 지정된 패널위원의 보조인

"권한있는 대표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나. 분쟁 중 당사국이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고 그 당사국이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위임사실을 통지한 당사국의 법률 고문 또는 그 밖의 자문인 또는 컨설턴트. 단, 비밀 정보를 수령함으로써 제22장에 따른 절차 밖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실체의 인 또는 피고용인, 임원 또는 대리인을 모든 상황에서 제외한다.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비밀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전자 문서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의함, 또는

나.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종이 또는 전자 문서의 경우, 상업적 특급배송서비스로 익일배송에 의함

"행동규범"이라 함은 제22.9조제4항라호 (패널의 설치)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범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비밀 정보"라 함은 규칙 제16호에 따라 당사국이 그와 같이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

"전달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패널 또는 책임 사무소에 당사국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책임 사무소가 그 당사국에 제공한 수취확인서에 기재된, 책임 사무소가 문서를 접수한 날, 또는
- 나. 패널 또는 책임사무소가 전달한 문서에 대하여, 책임사무소가 관련 당사국에 전자 문서를 전송한 날, 또는 종이 문서에 대한 상업적 특급 배송 서비스의 기록에 기재된 날 중 이른 날

"일"이라 함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전달"이라 함은 전자 문서에 대하여, 전달 매체 또는 전자적 전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적 형태를 불문하고, 패널 절차 중에 제출된 모든 서면형식을 포함한다.

"전자 문서"라 함은 그 문서의 종이 문서본과 동일한 상업적 문서작성 형식으로 된 문서본을 말한다.

"정보"라 함은 종이 문서, 전자적 파일, 또는 구두 정보를 포함하여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제22.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사무소"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22.5조(분쟁해결절차의 운영)에 따라 당사국이 지정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패널"이라 함은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원"이라 함은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협정의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라 함은 제소 당사국이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공휴일"이라 함은, 당사국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그 당사국이 공휴일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 그 밖의 모든 일을 말한다.

"기록"이라 함은 정보가 기록되거나 저장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 사무소"라 함은 규칙 제88호에 적시된 기능을 담당하는 피소 당사국 내의 사무소를 말한다.

3. 이 모범 규칙에서 조, 부속서 또는 장에 대한 모든 언급은 협정의 적절한 조, 부속서 또는 장을 지칭한다.

위임사항

4. 제소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위임사항을 책임 사무소에 신속히 전달하고, 책임 사무소는 다시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패널이 구성된 경우 그 패널에 이를 전달한다.

5.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임사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를 책임 사무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책임 사무소는 제22.10조제3항(절차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양 당사국 및 패널이 구성된 경우 그 패널에 전달한다.

서면 입장 및 그 밖의 문서

6. 어떠한 문서도, 그 문서를 이 모범 규칙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책임 사무소가 접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책임 사무소를 통해 패널에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공식본을 전자적 또는 종이 형태로 책임 사무소에 전달하며, 또한 같은 날 전자 또는 종이 사본을 적절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하며, 책임 사무소에 전달하는 때에,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사본을 전달했음을 명시한다. 책임 사무소는 또한 다른 쪽 당사국의 사무소에 전자 사본을 전달한다. 문서의 일부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이를 전자 사본에 명시해야 하며, 그 문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사본을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책임 사무소가 양 당사국이 패널에 제출한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그러한 문서의 전자 사본을 패널위원들에게 같은 날 배포한다. 그 문서의 일부가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실행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패널위원들에게 그 문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종이 사본을 전달한다.

8. 제소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제출한다.

9. 피소 당사국에 대한 패널의 설치 요청 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사무소가 문을 닫는 공휴일 목록과 그 당사국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책임 사무소에 전달한다. 패널 구성 후 7일 이내에, 패널은 다음을 규정하는 패널 절차에 대한 일정표를 공표한다.

- 가. 피소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최초 서면 입장을 제출.
- 나. 피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 전달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의 모든 반박입장을 제출
- 다. 제소 당사국의 반박 입장 전달로부터 21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의 모든 반박입장을 제출
- 라. 피소 당사국의 반박 입장 전달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
- 마. 심리 최종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패널의 모든 서면 질의를 양 당사국에 전달
- 바. 심리 최종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심리 중에 발생한 모든 사안 및 패널로부터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당사국의 보충적 서면 입장을 제출 그리고
- 사. 패널로부터의 서면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보충적 서면 입장에 대한 한 쪽 당사국의 의견 및 패널로부터의 서면 질의에 대한 모든 응답을 제출
10. 당사국이 책임 사무소에 문서를 전달하는 때에, 책임 사무소는 문서의 제목과 전달일을 명시하는 수취 확인서를 그 당사국에 제공한다.
11. 패널 절차와 관련된 요청, 통보, 서면 입장 또는 다른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제출로 정정될 수 있다. 당사국은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패널이 지정하는 다른 때에 그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 정정은 규칙 제9호에 따라 패널이 규정한 패널 절차에 대한 일정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2. 이 모범 규칙에 따라 당사국의 사무소에 전달되는 문서는 모두 그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중에 전달되도록 한다. 그 사무소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이후에 전달되는 모든 문서는 다음 영업일 중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당사국의 문서제출일이 그 당사국의 공휴일 또는 그 당사국의 사무소가 불가항력에 의해 문을 닫는 날이 되는 경우, 문서제출일은 그 당사국의 다음 영업일이 된다.

서면 입장제출 및 그 밖의 문서의 공표

14. 규칙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당사국의 서면 입장제출, 구두 진술의 서면본, 패널이나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서면 응답, 제19.7조제1항(노동협의), 제20.9조제1항(환경협의 및 패널절차) 및 제22.7조(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협의 요청, 그리고 제22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통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공표한 각 문서는 공개된다. 이 조항에서 "문서"라 함은 순수하게 행정적인 성격의 문서를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책임 사무소는 책임사무소에 문서가 전달된 후 즉시 그러한 문서 및 통보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2.11조제4항(패널 보고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또한 그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5. 어떠한 당사국도 제22.11조제1항(패널 보고서)에 따라 양 당사국에 제출된 최초 보고서의 내용 또는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의견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

16. 비밀 정보 또는 제23.2조(필수적 안보)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공개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는 당사국이 국제 평화나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 또는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예 기술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부록2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비밀 정보는 입장제출의 증빙자료 또는 첨부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장제출에 포함된 특정 사실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할 수 있다. 비밀 정보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공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모든 민감한 사실 정보에 한정된다. 각 당사국은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17. 당사국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그 비밀 정보가 편집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그 고유의 비밀 정보가 요약되어 있는 그 문서의 공개본을 준비하여 전달한다.

18. 당사국이 문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의 공개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편집한 후, 그 문서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19. 당사국이 규칙 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입장제출로부터 비밀 정보를 편집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문서의 공개본에 그러한 정보가 편집된 각 장소를 명확히 표시한다.

20. 당사국은 규칙 제16호에 기술된 특정한 사실 정보를 밝히는 한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의 서면 법적 주장의 어떠한 부분도 비밀 정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의 확인 및 취급 절차

21. 규칙 제21호 내지 제24호와 부록2는 당사국이 패널 절차 중에 제출하고 비밀 정보로 지정한 정보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록2의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차는 당사국이 처음 제출한 비밀 정보 및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에 대하여 당사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규칙 제16호 및 부록2에 따라 비밀 정보라고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패널에 제출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이 모범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 정보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3. 당사국은 부록2에 명시된 비밀 정보를 적시, 접근, 사용, 저장 및 처분한다.

24. 각 당사국은 부록1에 따라 승인된 인으로 지정된 자국의 권한 있는 대표자 각각이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패널은 부록1에 따라 승인된 인으로 지정한 권한 있는 피고용인 또는 패널위원의 모든 보조원 각각이 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패널의 운영

25. 패널의 의장은 패널의 각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이 모범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팩스 전송, 화상회의 및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7. 패널의 논의에는 패널 위원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보조인, 통역사 또는 번역사의 출석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심의 중에 논의된 어떠한 정보도 당사국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8. 이 모범규칙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패널은 협정 또는 이 모범규칙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29. 세 명의 패널위원 후보 모두의 선정에 있어서, 책임 사무소는 각 패널위원 후보에게 패널위원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는 각 패널위원 후보가 패널위원으로 패널에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제안에 수락한 후 신속하게 당사국에게 그러한 수락을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는 패널 후보와 연락을 한 날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책임 사무소가 패널위원 후보와 최초로 연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후보가 패널에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수행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에게 이를 알리고 그러한 패널위원 후보는 직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최초로 패널위원 후보와 연락을 할 때, 책임 사무소는 최초 공개 진술 양식 및 행동규범 사본을 제공하고, 각 패널위원 후보에게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제안에 수락하는 경우 최초 공개 진술을 작성하고 그것의 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한다.

30. 책임 사무소가 세 명의 패널위원 후보 모두에게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제안을 수락한 작성된 최초 공개 진술 양식을 수령한 날에, 그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에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제22.11조제1항(최초 보고서)에 규정된 180일의 기간은 책임 사무소의 통보일로부터이다. 이 규칙에 따라, 패널은 책임 사무소가 당사국에게 그 설립을 통보하는 날짜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1. 패널위원 후보가 임명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규칙 제32호에 따라 패널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또는 달리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협정의 제22.9조(패널의 설치)와 이 모범규칙의 규칙 제29호에 규정된 선정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체자를 선정한다.

32. 양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제22.9조제4항라호(패널의 설치)를 준수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을 해임하거나, 실패를 면제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실패를 면제하거나, 개선 후 실패가 중지되었다고 결정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계속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제22.9조제4항라호를 준수하는데 잠재적으로 실패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제22.9조제4항라호(패널의 설치)를 준수하도록 잠재적 실패에 대처하도록 노력한다.

33.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망, 사임, 해임되거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허락되거나, 또는 달리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날로부터 대체자가 선정되거나 개선 후 실패가 면제 또는 중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34. 패널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하기로 공동 요청을 하는 경우, 업무를 언제든지 정지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이 모범규칙에 규정된 모든 관련 일정표는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 권리는 소멸된다.

35.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수정할 수 있고, 패널위원이 교체될 때와 같이 절차에 요구되는 대로 다른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할 수 있다.

36. 패널은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배타적으로 고려하고, 사안을 결정하는 그들의 책임을 다른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심리

37. 의장은 양 당사국, 다른 패널 구성원, 그리고 책임 사무소와 협의 한 후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한다. 책임 사무소는 결정된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의 서면 반박 입장 제출 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를 연다.

38.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연다.

39.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추가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40. 모든 패널위원은 각 심리에 출석한다. 최초 심리 이후에 패널위원 대체자가 선정된 경우, 패널은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새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 심리를 연다.

41. 패널의 모든 심리는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심리에 물리적으로 임석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패널 심리를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널은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과 연계하여 결정한 수단으로 그러한 심리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를 유선방송을 제외한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 양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개한다. 단, 패널은 모든 비밀 정보 논의 기간 동안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한다.

42. 심리 중에 비밀 정보를 제출 또는 논의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에 그러한 의도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그러한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43. 승인된 인만 심리의 비공개 된 부분에 참석할 수 있다.

44. 심리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규칙 제6호에 따라 심리에 참석하는 당사국 대표단의 이름이 있는 문서를 다른 쪽 당사국과 책임 사무소에 전달한다.

45.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주장

다.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라.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46.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당사국에게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7. 책임 사무소는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준비된 이후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히 양 당사국과 패널에게 그 속기록의 전자사본을 전달한다.

통보

48. 협정과 이 모범규칙의 요건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패널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수령이 합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할 수 있다.

49. 패널은 규칙 제48호에 따라 적절한 경우 통보 주소를 양 당사국의 사무소로 한다. 패널은 이 통보를 책임 사무소를 통해 전달한다.

보충적 서면 입장

50.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제시할 수 있다. 패널은 서면 질의를 전자적 그리고 서면 형태로 책임 사무소를 통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즉시 전자 사본을 전달하고 질의의 종의 사본은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51. 각 당사국에게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하는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52. 각 당사국은 심리 중 제기된 사안에 답변하는 보충적 서면 입장을 책임 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다.

53. 각 당사국은 규칙 제7호에 따라 패널의 서면 질의, 서면 의견, 또는 규칙 제50호, 제51호 또는 제 52호에 따른 다른 모든 입장에 대한 답변을 규칙 제9호에 따라 패널이 규정한 일정표에 명시된 날짜 이내에 제출한다.

비정부기관의 서면의견 제출

54. 패널은 제22.10조제1항마호(절차규칙)에 따른 서면의견 제출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비정부기관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단, 그 기관은 규칙 제55호 및 제56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5. 비정부기관은 피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의견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그 입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개본이 공개된 이후로부터 7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에 서면 의견 제출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그 요청은

- 가. 적용 가능한 경우, 활동의 성격, 회원 자격, 법적 지위, 자금원 및 당사국 영역 내의 주소를 포함한 요청을 제출하는 비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 나. 비정부기관이 자신의 서면 의견에서 다룰 것으로, 패널이 고려하는 어떠한 법적 또는 사실적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한 사안을 적시한다.
- 다.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이 어떻게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당사국이 한 혹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적 그리고 사실적 주장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 같은 이유, 또는 양쪽 당사국과 다른 시각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 라. 비정부기관이 어느 한쪽 당사국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청이나 서면 의견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회원이나 변호인 이외의 당사국, 그 밖의 정부, 개인 또는 기관에게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문안을 포함한다. 그리고
- 마. 네 쪽을 넘지 아니한다.

56. 규칙 제55호에 따른 요청 또는 제59호에 따른 입장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문서는 행간 여백 없이 타자로 작성하며, 12 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체 또는 휴먼명조체로 8.5x11인치 크기 또는 A4용지에 1인치 또는 2.5센티미터의 여백을 설정하여 작성한다. 요청 또는 입장은 비정부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고, 규칙 제7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57. 책임 사무소는 각 당사국에게 비정부기관의 모든 요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그 요청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에 패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의견의 전체 또는 부분 제출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책임 사무소는 신속하게 (가) 비정부기관과 양 당사국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나) 그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58. 규칙 제57호에 따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패널은 규칙 제55호에 기재된 요소와 규칙 제56호의 준수를 고려한다.

59. 패널이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비정부기관은 심리일로부터 21일 이전에 책임 사무소가 지정하는 날까지 서면 의견을 패널에게 제출한다.

60.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은 규칙 제56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 모든 부록을 포함하여 1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비정부기관이 요청에 기술하고 패널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적 및 법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61. 책임 사무소는 규칙 제59호에 따라 비정부기관의 모든 서면 의견을 신속하게 양 당사국에게 제공하며 그 서면 의견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62. 패널은 각 당사국에게 패널이 수령하기로 결정한 어떠한 비정부기관의 어떠한 서면 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63. 패널은 규칙 제59호 및 제60호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서면 의견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패널은 수령하기로 결정한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에 제기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언급할 것을 요구 받지 아니한다.

64. 분쟁에서 비정부기관의 서면 의견 제공 요청의 제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당사국은 패널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을 공개적으로 통보한다.

(가) 패널의 설치,

- (나) 각 당사국 영역 내의 비정부기관이 분쟁에서 서면 의견 제공 요청을 제출할 기회, 그리고
- (다) 이 모범규칙에 합치되는 그러한 제출을 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65. 패널은 비정부기관에게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 절차에 참여할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방적 접촉

66.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67.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과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 쪽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68. 당사국 대표자의 부재 시,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인 또는 기관과 회합하거나 패널이 고려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지 아니한다.

정보 및 기술적 자문

69. 패널은 제22.10조제4항(절차규칙)에 따라 자체 발의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심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70.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인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71. 패널은 본인, 또는 그의 고용인, 파트너, 동업자 또는 가족이 본인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 규범상 부정의 인상 또는 편견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해를 가지는 경우 규칙 제70호에 따라 그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패널은 기관, 또는 그 소유인 또는 지배인, 또는 패널의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 요청을 처리하는 고용인이 기관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동 규범상 부정의 인상 또는 편견의 우려를 합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이해를 가지는 경우 규칙 제70호에 따라 그 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한다.

72. 각 당사국은 규칙 제70호에 따른 인 또는 기관 선정일 후 5일 이내에, 제안된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 요청에 대하여 규칙 제7호에 따라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을 종결 짓는데 있어 양 당사국의 의견을 고려한다.

73. 패널은 책임 사무소에 그 요청의 사본을 전달하고, 책임 사무소는 양 당사국 및 규칙 제70호에 따라 선정된 인 또는 기관에 그 요청의 전자 사본을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그 요청을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4. 패널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은 인 또는 기관이 그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책임 사무소에 답변을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75. 책임 사무소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 받은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을 양 당사국에게 전달하고 규칙 제14호에 따라 대중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패널은 규칙 제7호에 따라 양 당사국에게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이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그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하도록 날짜를 정한다.

76.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의 제공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요청이 전달된 날로부터 패널에 그 정보 또는 기술적 자문이 전달된 날 또는 그 요청이 전달된 날 후 45일 중 이른 날까지 정지된다.

기간 산출

77. 패널 절차를 위한 기간은 피소 당사국 영역의 날짜에 합치되는 달력상의 일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78. 협정, 이 모범 규칙 또는 패널이 어느 날짜 또는 사건 전 또는 후에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날짜 또는 사건 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언어

79. 패널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위한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하나의 공동 작업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모든 서면입장 제출 및 구두 변론을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양 당사국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언어를 공동 작업언어로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9(가)호, 제9(나)호, 제9(다)호, 제9(바)호, 제9(사)호, 제55호, 또는 제59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서면입장 제출 기간을, 적절한 경우, 최대 3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패널은 3일 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

80. 각 당사국은, 패널 절차에서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전달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서면 입장 및 구두 변론을 영어, 한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할 것인지 여부를 책임 사무소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패널에게 통지한다.

81. 규칙 제80호에 따라 각 참여 당사국이 제공한 자문에 의거하여, 양 당사국이 패널 절차에서 구두 변론을 두 개 이상의 언어로 할 의사가 있거나, 패널위원이 심리의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책임 사무소는 심리 통역을 주선한다. 패널위원이 서면 입장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을 요청하는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번역을 주선하고 양 당사국에게 서면 입장 번역본을 전달한다. 한 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번역을 요청하지 아니한 서면입장의 번역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책임 사무소에 이를 알리고, 책임 사무소는 신속히 번역을 주선하고 양 당사국에게 서면 입장 번역본을 전달한다. 책임 사무소는, 패널위원 또는 한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면입장 번역에 필요한 시간을 신속히 산정한다.

82. 책임 사무소가 문서의 번역을 주선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 문서의 제출에 따라 산출이 되는 기간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번역 기간을 주도록 한다.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규칙 제81조에 따라 패널에게 제공된

산정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패널은 규칙 제9호에 따라 공표된 일정표를 그에 상응하도록 조정한다.

83. 패널위원이 번역을 요청하지 아니한 문서를 번역하는 데서 발생한 비용은 번역을 요청하는 당사국이 부담한다. 패널 절차에서 요청된 그 밖의 모든 번역 및 통역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84. 각 당사국은 이 모범 규칙에 따라 행해진 통역 또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원본 문서와 이 모범 규칙에 따라 준비된 번역본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원본 문서가 우선한다.

혜택의 정지 및 이행 패널

85. 패널은 제22.13조 (불이행) 또는 제22.14조 (이행 검토)에 따라 한 쪽 당사국이 패널을 요청하는 경우 재소집한다. 그러한 요청 시점에 패널위원이 직무수행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대체되는 패널위원을 선정했던 선정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86. 이 모범 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제22.13조 (불이행) 또는 제22.14조 (이행 검토)에 따라 재소집된 패널에 적용된다. 단, 다음을 제외한다:

- (가) 패널의 재소집을 요청하는 당사국은 패널의 재소집일 또는 재소집 된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인들이 확정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 (나) 패널이 공표하는 일정표는 규칙 제85호에 따라 패널을 요청한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최초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날짜를 정한다
- (다)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서면 입장 제출을 위한 날짜를 정하여 각 당사국이 협정 및 이 모범 규칙에 규정된 패널 절차를 위한 기한을 조건으로 동일한 수의 서면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 (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심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및 자동차에 관한 분쟁

87. 이 모범 규칙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제13.18조 (분쟁해결) 및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에 따라 설치된 패널과 그 절차에 적용된다.

책임 사무소

88. 피소 당사국은 책임 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가) 패널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나) 패널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다) 패널위원 및 패널 절차에서 패널이 보유하는 그 밖의 개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을 주선한다.
- (라) 협정과 이 모범 규칙 및 행동 규범을 포함하여 절차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의 사본을 패널위원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마) 심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실행 계획을 조직하고 조율한다
- (바) 패널 절차의 완전한 기록 사본을 영구적으로 보유한다 그리고

(사) 협정, 이 모범 규칙에 따른 또는 공동 위원회가 정한 그 밖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패널후보명부의 유지

89. 양 당사국은 제22.9조제3항 (절차 규칙)에 따른 패널후보명부의 구성을 각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알린다. 양 당사국은 패널후보명부에 가해진 모든 변경에 대하여 다른 쪽 상대국에게 신속히 알린다.

보상 및 경비의 지급

90. 교통비 및 숙박비를 포함하여, 제 22.10조4항 (절차 규칙) 및 이 모범 규칙에 따라 패널위원 및 패널절차에서 패널이 보유하는 그 밖의 개인이 제공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규칙 제81호 내지 제83호에 따라 합의된 경우 번역 및 통역 비용을 포함한 패널의 제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91. 각 패널위원, 보조인 및 전문가는 각자의 시간 및 경비를 기록하고 최종 청구서를 책임 사무소에 제공하며 패널은 제반 경비를 기록하고 최종 청구서를 제공한다.

개정

92. 양 당사국은 이 모범 규칙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발효 및 종료

93. 이 모범 규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94. 이 모범 규칙은 본 협정의 종료와 함께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종료한다.

부록 1 승인된 인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비밀 정보에 접근이 필요하고 패널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권한 있는 대표 명단을 패널 및 다른 쪽 당사국에 제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명단상의 인 수를 가능한 한 제한한다. 한 쪽 당사국은 자국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한 쪽 당사국 또는 책임 사무소는 비밀 정보를 수령함으로써 제22장에 따른 패널 절차 밖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인, 또는 실체의 피고용인, 임원 또는 대리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3. 책임 사무소는 분쟁 중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패널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책임 사무소의 승인된 피고용인 또는 패널위원의 보조인 명단을 패널 및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책임 사무소는 명단상의 인 수를 가능한 한 제한한다. 책임 사무소는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4. 한 쪽 당사국은 명단 또는 명단에 대한 개정사항이 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행동규범의 위반을 입증할 정보에 대해 알게 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이 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전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은 해당 지정으로 인해 비밀 정보의 소유인 또는 정보원의 이해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5.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한 후 패널이 인을 지정하는 경우, 비밀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이 다음의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기 전까지 승인된 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 :
 - (가) 정보의 회수, 이 경우 패널은 비밀 정보를 제출한 당사국에게 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반환하고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 1) 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을 파기하거나, 또는
 - 2) 그 정보를 제출한 당사국에게 그러한 모든 기록을 반환한다. 또는 (나) 해당 정보의 비밀 정보로의 지정을 철회.

6. 인을 승인된 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조건으로 하여, 패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 상의 인을 분쟁을 위해 승인된 인으로 지정한다. 각 승인된 인은 부록 3에 규정된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고 패널에 제출하여야 한다.